

구리시 공고 제2023-553호

2023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23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구리시장



2023년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3. 3.

구 리 시

2023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 참여계층 다양화
 - 예산학교 운영 시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인 시책 발굴 추진 원동력 생성
- 주요 정책과제 사업 발굴 시행
 - 실질적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사업 발굴하여 시행
- 주민참여예산 선정과정 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주민참여예산의 적극적인 홍보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선호도 반영한 사업 선정

II 2022년 운영성과

□ 운영실적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임 기 : 2022. 5. 19. ~ 2024. 5. 18.
 - 내 용 : 위원 수 증가(19명→30명 /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비영리법인단체종사자 등)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 자 : 2022. 7. 18.(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171명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 기 간 : 2022. 8. 10. ~ 8. 31.
 - 내 용 : 2023년 예산편성 방향, 중점투자분야 및 사업선정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2. 10. 26.(수)
 - 내 용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등
 - 결 과 : 총 19건의 사업 발굴 중 7건 채택
- ※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최근3년)

연도별	접수건수	사업부서 검토결과	예산반영		비고
			건수	예산액(천원)	
총계	71건	26건	23건	1,553,600	
2020년	30건	10건	8건	599,000	2021년 예산반영
2021년	22건	9건	8건	623,700	2022년 예산반영
2022년	19건	7건	7건	330,900	2023년 예산반영

□ 개선과제

-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위원의 참여 증대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주민제안 사업의 구체화 및 기획력 부족 등으로 사업 채택률 낮음
- 사업 중 도로정비 등 시설물 사업의 비중이 높음

→ 예산학교를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필요

III 2023년 주요 추진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실화

-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면밀한 사업 검토 및 현장검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생중계 및 결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실현 등 구리시 재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실시(홈페이지, 생생문자, 서면 설문조사,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통한 의견수렴 등)
- 시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통한 상시 주민제안 창구 운영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내실화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
- 동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자치력을 강화할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 중심 편성

□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치력 강화

□ 주민참여예산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완료까지 예산부서-사업부서-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과 연계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차 예산부서 분류, 2차 사업부서 검토, 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선정

○ 기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

IV 주요 추진일정

일 정	추진사항	세 부 내 용
3월	운영계획 수립·공고	○ 주민참여예산계획 수립 및 공고 (시홈페이지)
4월	예산학교 운영(1차)	○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장 및 실무자,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중점, 대민홍보 방법 등
5~7월	주민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홍보 - 시·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모 및 홍보 실시
6월	예산학교 운영(2차)	○ 알기쉬운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 참여계층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 청년 참여 유도 - 예산편성 절차, 주민참여예산 사례 등 교육
7월	예산편성 설문조사	○ 2024년 예산편성 방향, 중점투자분야 및 사업선정 등
8월	사업분류, 제안사업 검토	○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시급성 등 종합적 검토
9월	제안사업 현장점검	○ 제안사업 현장확인 및 부서 검토의견 논의
10월	사업 심의·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현장 확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최종사업 선정 - 심의과정 유튜브 생중계
11월	예산(안) 조정·확정	○ 예산(안) 조정·확정(예산부서)
12월	예산(안) 의결 및 결과 공개	○ 주민참여예산(안) 의결 ○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V 2023년 세부 운영계획

1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운영

□ 사업규모 : 10억원

- 시민제안형 1억원, 읍면동자치계획형 9억원

※ 변동사항 : 민관협치형 공모사업(1억원, 행복소통담당관) 미운영

□ 참여자격(조례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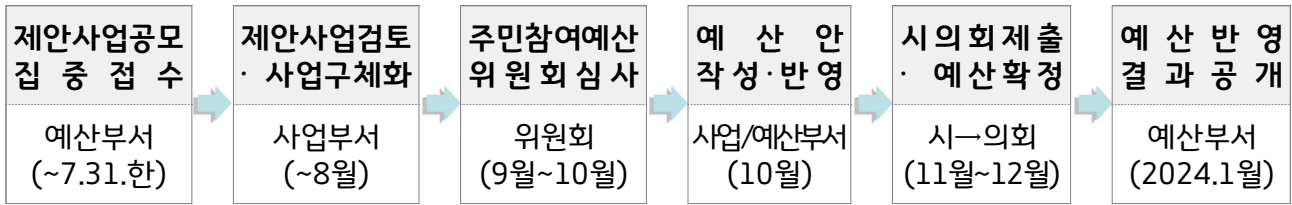
-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참여방법 :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

□ 유형별 구분 및 내용

구분	시민제안형	읍면동 자치계획형
제안자	일반시민 (개인 등)	동별 주민대표기구 (주민자치회 또는 통장협의회)
예산 규모	1억원	9억원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협조)총무과(자치행정팀)/8개동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 절차	제안사업 집중접수 → 사업부서 검토·사업구체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확정	
기간	(집중접수) 5.1.~7.31.(3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등	

□ 시민제안형/읍면동 자치계획형 제안사업 공모절차



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접수

- 집중접수기간 : 2023. 5. 1. ~ 7. 31.(3개월간)
 - * 시 홈페이지 내 연중 상시접수 가능, 7월 이후 접수사업은 내후년 제안사업으로 처리
- 접수방법
 - 직접 제안 :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
 - 읍면동자치계획형 제안 : 동 주요사업 발굴 후 우선순위 선정 후 제출
- 공모제외 대상

《 공모 제외 대상 》

-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업
- 기 추진중인 사업이거나 행사성사업(프로그램)인 경우
 - * 단,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추진방향(계획)의 변화로 사업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제안은 인정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민원 성격의 사업
- 사유지 내(개인, 법인 등)에 시행되는 사업
- 특정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지원 사업
- 상급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지적된 사업
- 주민 간의 다툼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 단순 민원처리, 시설운영 등에 투입되는 사업
- 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
- 기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

② 요건심사 및 제안분류(사업부서)

- 【요건심사】공모제외대상 검토, 부적격 사업 제외

- 【제안사업 분류】유사 사업 통폐합 후 사업유형 분류 및 담당부서 지정
 - 반영가능(전부반영, 일부반영, 대안반영, 당해연도 즉시처리가능), 장기검토과제, 계속진행사업, 타기관 소관, 불가사업 등 의견 작성
 - 사업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반드시 첨부, 제안자 의견청취 결과 기재

③ 부서검토 및 사업구체화 (사업부서)

- 【사업 구체화】 담당부서와 제안자가 협업하여 제안 내용 구체화 및 보완
- 【예산규모 산출】 대상사업의 소요금액 산출

④ 예산 적정성 심사(예산팀)

- 예산편성 기준 위배 여부, 예산 낭비적 요소 여부 검토

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 및 확정

- 【심사내용】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토론, 대상사업 규모 내 우선순위 및 예산액 결정(조정)
- 【현장검증】 1차 서면심사 후 필요시 현장방문

⑥ 최종심의 및 예산안 편성

- 최종 선정된 사업을 2024년 예산안에 반영

2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구 성 : 총 3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29명)
- 임 기 : 2년 (2022. 5. 19. ~ 2024. 5. 18.)
- 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중 시 소관 사업의 심의·의결
-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실무중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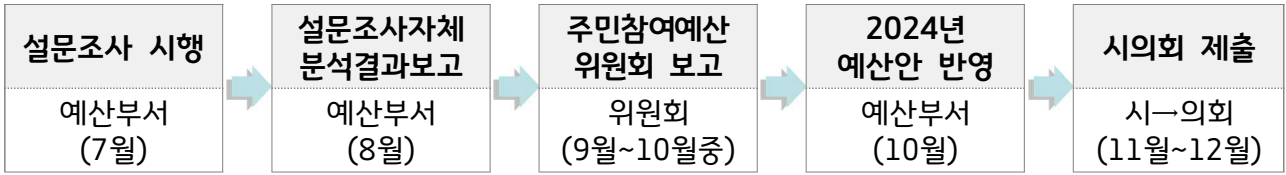
- 시 기 : 2023. 4월
- 대 상 :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개요, 제외대상 사업, 대민홍보 방법
 - 주민자치-참여예산 연계방안 등

□ 【시 민】 알기쉬운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2차)

- 시 기 : 2023. 6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 내 용
 - 주민자치·참여예산 연계방안
 - 2023년도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타시군 사례 소개 등을 통하여 참여계층 다양화, 제안사업 신청 유도
 - 사업 구체화 방법 및 사업제안서 작성 교육 등

④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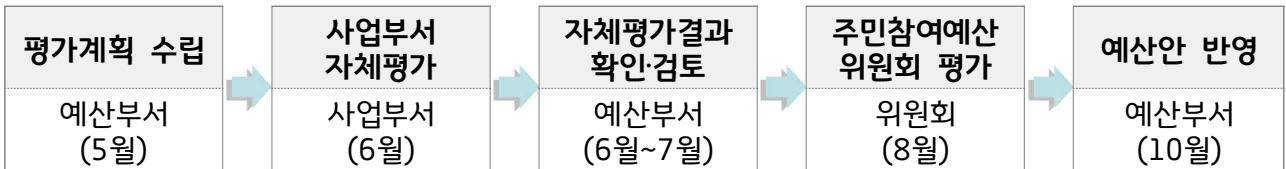
□ 설문조사 절차



- 설문기간 : 2023. 7. 1. ~ 7. 31. (1개월간)
- 설문대상 :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근무 직장인 및 사업주
- 설문방법 : 시 홈페이지, 생생문자(모바일), 서면 설문지 등
- 설문내용 ※ 설문조사 항목 등 세부내용 별도 계획 수립
 - 2024년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부문 우선순위 조사
 - 공약사업 등 시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조사

5 2022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투자사업) 평가에 주민 참여

- 2022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투자사업) 평가에 주민 참여
 -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
- 주요재정사업(투자사업) 평가 절차



- 평가대상 : 2022회계연도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 이상(자체재원) / 일반 및 특별회계 / 이월사업 포함
- 평가결과 활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반영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점수	90점 이상	89점~80점	79점~70점	69점~60점	60점 미만
비율*	5% 미만	15% 미만	70%	10% 이상	
예산반영	증액가능	증액가능	유지	10%이상 삭감	미반영

6 주민제안사업 집행점검(모니터링) 및 환류

- 대상사업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7건 ※ 2022년 선정
- 점검시기 : 분기별
- 주요내용 : 사업 진행상황(계획수립, 진행률 등), 애로사항, 민원사항, 예산낭비 등 모니터링
- 점검방법 : 사업부서 자체점검 후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 결과활용(환류)
 - 모니터링 결과(문제점 등)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24년 사업 선정 시 반영

7 홍보 계획

홍모매체	주요내용	추진기간	협 조
시 대표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	집중접수기간 5.1 ~ 7. 31.	행복소통담당관
인터넷, 언론사 등	시청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		행복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
버스정류장 홍보	버스정류장 전광판 안내		교통행정과
지역사회 홍보	동사무소 게시대 활용 기간단체 회의시 홍보		각 행정복지센터

VI 행정사항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발굴 협조(총무과, 각 동)
 - 각 동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신청 안내 및 접수 독려

- 동별 1개 사업 이상 제출 협조
-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홍보 및 접수 협조(전부서)
- 발굴사업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협조(사업부서)

-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부서 제안사업 검토서
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1)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자	성 명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주 소 [거주지/사업장]			
	연 락 처		이 메 일	
제안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대상 [수혜자]				
사업목적 [제안 취지]				
소요예산	0,000 천원 / 사업기간 : 2024.00.00. ~ 00.00.(최대 1년)			
사업내용	※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2023년 월 일				
구리시장 귀하				

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 · 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구리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및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신청서를 통한 수집

다. 이용기관 : 구리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참여 등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2년간(단, 예산편성사업은 5년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안내 사항 전달 등 사업관리	신청접수일로부터 2년간 (단, 예산편성사업은 5년간)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2024년 구리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성명: _____ (서명)

성명: _____ (서명)

성명: _____ (서명)

성명: _____ (서명)

※ 개인 신청자의 경우 공동제안일 경우 신청자 전원 작성 / 단체 신청의 경우 대표자 작성

[붙임3] 부서 제안사업 검토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의견서			
제안사업 내용			
제안자	성명 : 000 / 연락처 : 010-0000-0000		
사업명			
사업대상 (수혜자)			
사업목적 (제안취지)			
소요예산	천원 / 사업기간 : 2024.00.00.~2024.00.00.		
제안사업내용 (요약)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제안공모 제외대상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사유 :	
법령·조례 등 저촉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사유 :	
유사·중복사업 추진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 해당 사업명 :	
종합의견	추진가능 () 추진불가 ()		
	※ 사업 타당성, 실효성, 추진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후 → 추진가능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하여 사업계획서(별지) 작성 → 추진불가 사업의 경우 검토항목별로 불가사유를 구체적 기재		
부서명	0000과 0000팀		
검토자	팀장 직급	성명	☎ 0000
	담당자 직급	성명	☎ 0000

[별지]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제안사업명	
사업부서	0000과 0000팀
사업대상 (수혜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천원
사업비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작성기준(순서준수) : 단가(천원)×인원(명)×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붙임4】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09.23 조례 제182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0. 9. 2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 9. 23.>